

거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006 - 36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연월일 2006년 7월 20 일

발 의 자 신주범 의원 외 9 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및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 “거창군의회회의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 회의 규칙”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 명 앞뒤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
⇒ 지방자치법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개정함(안 제1조)
- 의회운영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로 개정함(안 제3조, 제16조, 제20조의3, 제73조)
-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함(안 제20조)
-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(안 제70조, 제71조, 제72조, 제82조, 제85조, 제86조)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
-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거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회의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 회의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, 제16조제2항, 제20조의3, 제73조제1항 중 “의회운영위원회”를 “각 상임위원회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”를 “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”로 한다.

제70조제1항, 제71조제1항 제2항 제3항, 제72조제1항 제2항, 제82조 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중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거창군의회회의규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-----</p> <p>제3조(의석배정)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<u>의회운영위원회</u>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16조(의사일정의 결정)①(생략)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<u>의회운영위원회</u>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제20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(생략) ②의장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의회운영위원회</u>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</p> <p>제20조의3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<u>의회운영위원회</u>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<u>징계자격특별위원</u></p>	<p>거창군의회 회의 규칙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-----</p> <p>제3조(의석배정) ① ----- -- 각 <u>상임위원회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의사일정의 결정)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<u>각 상임위원회</u>----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<u>각 상임위원회</u>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제20조의3(위원회의 제출의안) ----- -----<u>각 상임위원회</u>-----</p> <p>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①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</p> <p>②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. 다만,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.③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 <p>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</p> <p>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, 발언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, 발언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제73조(경호)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의회운영위원회</u>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창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</p>	<p>회 -----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①----- -----<u>윤</u> <u>리특별위원회</u> -----.</p> <p>②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<u>윤리</u> <u>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<u>윤리특별</u>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3조(경호) ①----- -----<u>각 상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</p>

